

## 제4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I. 논문 공모 안내

#### 1. 목적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 Center)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2. 참가 대상

- 전국 대학(원)생: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 참가 형태는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2인)

#### 3. 논문 주제

- ICR센터의 설립취지([www.icr.re.kr](http://www.icr.re.kr) 참조)에 부합하는 자유주제. 단,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가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각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

#### 4. 시상 내역

- 최우수 논문 1편  
고려대학교 총장상 및 상금 200만원 및 해외학술행사 참가기회
- 우수 논문 2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 장려 논문 3편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상금 100만원
  - 수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은 후원 로펌에 인턴 등으로 지원 시,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는 ICR센터의 기관 후원회원인 6개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함)
  - 논문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를 제공함

- 수상논문은 ICR센터 발간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
- ICR센터 주최의 학술행사에서 수상논문 발표기회 제공
- 수상자는 상금 수령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함

## 5. 논문의 평가 기준

-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시의적절성
-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적절성 및 참고자료의 신뢰성
-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
- 논문의 형식기준

※ 응모 논문은 타 기관이나 경연대회 등에 중복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통상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표절, 대리 작성 등) 또는 타 경연대회 중복수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시상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6. 추진 일정

- 8월 29일(월) 오후 5시 논문접수마감
- 9월 29일(목) 오후 3시 수상자 발표
- 10월 13일(목) 수상논문발표대회 및 신진학자 발표대회

## 7. 제출

- ICR센터 사무국 메일 [icr@icr.re.kr](mailto:icr@icr.re.kr)로 논문과 이력서 및 동의서 제출 (이력서 및 동의서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 II. 논문 작성 요령: “규제와 법정책” 심사규정을 따름

### 1. 원고작성 기준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Microsoft 『워드』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ICR센터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2) 제출원고의 구성

1) 제출원고는 『제목 - 저자표시 - 국문초록 - 국문주제어(5개내외) - 목차개요

(큰제목까지만)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초록(선택사항) - 영문주제어(선택사항)』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A4용지 2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3) 영문 초록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초록본문, 주제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목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I (‘큰제목’으로 설정)
  - 1. (‘중간제목’으로 설정)
  - (1) (‘작은제목’으로 설정)
  - 1) (‘아주작은제목’으로 설정)
  - (가) (‘바탕글’로 설정)
  - 가) (‘바탕글’로 설정)
  - i) (‘바탕글’로 설정)

### (3) 원고의 편집형식

- 1) 편집용지(A4)의 여백주기
  - 여백: 워드 기본형
- 2) 글자모양
  - 서체: 함초롬바탕, 장평: 100, 크기: 10.
- 3)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첫 줄 / 1글자, 줄간격: 1줄, 맞춤: 양쪽 맞춤

## 2. 각주의 표기

### (1) 기본원칙

- 1)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의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예) Harvard Law Review -> H. L. R.

###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1) 저서의 인용
  - (가) 저자명, 『서명』, 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수.
  - (예)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7판, 법문사, 2013, 10면.

(나)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성명으로 표기한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윗금이의 성명을 쓰고 “윗김”을 덧붙인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

(예) 프랑크 잘리거 지음/윤재왕 옮김, 『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 세창출판사, 2011, 10면.

2) 정기간행물의 인용

(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인용면수 (필요한 경우 출판년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

(예)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안암법학」 제35권, 안암법학회, 2011. 11면.

(나)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다)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3) 기념논문집의 인용

(가)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나)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4) 판례의 인용

(가) 판결: 대법원 ○○○○.○○.○○. 선고 ○○◇○○ 판결.

(나) 결정: 대법원 ○○○○.○○.○○. 자 ○○◇○○ 결정.

(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 선고 ○○헌◇○○ 결정.

5)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

(가)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최종접속일자).

(예)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68>> (최종 접속: 2012.11.02.).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1)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 면수.

2)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한다.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한다.

(예) 서정범/김연태/이기춘, 『경찰법연구』, 제2판, 세창출판사, 2012, 11면.

2) 외국문헌과 외국판결을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3) 면수의 표기는 다음에 의한다.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11면, 15면-19면)으로, 외국어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1, pp.15-19) 또는 S.(S.11, S.15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4)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 )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출처 맨 뒤에 “~에서 재인용”이라 밝힌다.

### 3. 참고문헌의 표기

#### (1) 순서

국문,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 (2) 국내문헌

1)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서명』, 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2)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부록 : “규제와 법정책” 원고 작성방법 377

(3) 외국문헌의 경우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을 준용한다.

### 4. 논문초록의 표기

(1) 국문초록은 제목-저자 다음에 첨부한다. 초록 뒤에는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작성한다.

(2) 영문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부한다. 외국어 초록 뒤에는 5개 내외의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

(3) 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